

김포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400호
----------	--------

제출년월일 2024. 2. .
제출자 김포시장

1. 제안이유

- 인터넷 소통매체 활성화를 위한 시민 참여행사 개최와 경품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고 SNS 지원단의 임기를 재정비하여 활동 활성화의 제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홍보 수단으로 의미 확대

나. 사전협의 및 운영점검(안 제6조)

- 부서별 자체 SNS 채널 운영의 감소 및 포상 미운영에 따라 현행 운영 상황에 맞게 개정

다. 시민 참여행사의 운영(안 제8조)

- SNS 활성화를 위한 시민 참여행사 개최 및 경품 제공의 근거 마련

라. SNS 지원단 운영(안 제9조)

- SNS 지원단의 활발한 활동 유지를 위하여 임기 축소 (2년→1년 이하)

마. 보상(안 제11조)

- 지원·보상에 대한 모호한 내용 정비 및 포상 대상·내용 정비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나. 현행 자치법규 : 붙임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12. 20. ~ 2024. 1. 9. (20일)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부서협의결과

가) 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

나)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중앙 및 도 관련부서 : 해당 없음

김포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 를 “다음과”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홈페이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정보통신망을 접속하여” 를 “김포시(이하 “시” 라 한다) 홈페이지를 포함하여 SNS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시정을 홍보하고” 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 SNS “ 라 한다)” 란 Social Network Service” 를 ““SNS” 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지원단(이하 ” SNS 지원단 “ 이라 한다)” 이란 시장” 을 ““SNS 지원단” 이란 김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3조 중 “김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을 “시장” 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적용범위)” 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을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으로, “조례가” 를 “조례에서” 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그 밖에 시민” 을 “시민” 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또는 시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 제목 “(사전협의 및 운영점검)” 을 “(사전협의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김포시(이하 “시” 라 한다)” 를 “시” 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 센터” 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인터넷 소통매체 활성화를 위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민참여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 자에게 기념품·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제4항 중 “2년으” 를 “1년 이하” 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은 SNS 지원단의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원고료 등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인터넷 소통매체를 통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 및 공무원에게 「김포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홍보담당관
입 안 자	실·과·소장 성명	홍보담당관 이화미
	팀장 직위·성명	미디어팀장 이지은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전산서기 임수연(☎2069)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u>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터넷 소통매체”란 홈페이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정보통신망을 접속하여 이용자의 의견이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매체를 말한다. 2.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 SNS “ 라 한다)”란 Social Network Service의 약자로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을 구축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지원단(이하 ” SNS 지원단 “ 이라 한다)”이란 시장의 위촉을 받아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 및 자료 수집 등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p>제3조(시장의 책무) <u>김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u>은 인터넷 소통매체를 통한 시민의 행정참여 · 의견수렴, 시민 상호간의 소통과 연대 강화를 위하여 제반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 추진하여야</p>	<p>제2조(정의) ----- ----- <u>다음과</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김포시(이하 “시” 라 한다) 홈페이지를 포함하여 SNS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u>시정을 홍보하고</u> ----- -----. 2. “SNS”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 ----- -----. 3. “SNS 지원단”이란 김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 ----- ----- -----. <p>제3조(시장의 책무) <u>시장</u>----- ----- ----- ----- -----.</p>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인터넷 소통매체 개설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인터넷 소통매체의 개설 및 운영) ① (생략)

② 인터넷 소통매체 채널에 게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2. (생략)
- 3. 그 밖에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

제6조(사전협의 및 운영점검) ①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이하 “그 밖의 부서”라 한다)에서 인터넷 소통매체를 개설·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기관계정 운영부서의 장(이하 “인터넷 소통매체 담당 부서장”이라 한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생략)

③ 인터넷 소통매체 담당 부서장은 인터넷 소통매체 채널을 가지고 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
조례에서 -----

제5조(인터넷 소통매체의 개설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2. (현행과 같음)
- 3. 시민-----

4. 그 밖에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또는 시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전협의 등) ① 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② (현행과 같음)

<삭제>

는 그 밖의 부서의 운영 실태를 점검·평가하여야 하며, 운영 실적이 우수한 부서(직원)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민 참여행사의 운영) 시장은 인터넷 소통매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홍보, 시민간 상호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터넷 소통매체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시민참여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2. (생략)

<신설>

3. (생략)

<신설>

제9조(SNS 지원단 운영) ① ~ ③ (생략)

④ SNS 지원단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활동실적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다.

⑤ (생략)

<신설>

제8조(시민 참여행사의 운영) ① -----

-----.

1.·2. (현행과 같음)

3. 인터넷 소통매체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민참여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SNS 지원단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년 이하 -----
-----.

⑤ (현행과 같음)

⑥ 시장은 SNS 지원단의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원

제11조(보상) 시장은 SNS 지원단과 인터넷 소통매체에 기사·자료를 제출하거나 인터넷 소통매체를 기반으로 한 행사 참여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및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고료 등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인터넷 소통매체를 통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 및 공무원에게 「김포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김포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열린 시정으로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터넷 소통매체”란 홈페이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정보통신망을 접속하여 이용자의 의견이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매체를 말한다.
2.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 “라 한다)”란 Social Network Service의 약자로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을 구축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지원단(이하 “SNS 지원단 “이라 한다)”이란 시장의 위촉을 받아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 및 자료 수집 등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터넷 소통매체를 통한 시민의 행정 참여·의견수렴, 시민 상호간의 소통과 연대 강화를 위하여 제반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인터넷 소통매체 개설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인터넷 소통매체의 개설 및 운영) ① 시장은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시정참여를 돕기 위해 주요 인터넷 소통매체에 기관 계정을 개설하여 기관 인터넷 소통매체 채널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소통매체 채널에 게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

제6조(사전협의 및 운영점검) ①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이하 “그 밖의 부서”라 한다)에서 인터넷 소통매체를 개설·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기관 계정 운영부서의 장(이하 “인터넷 소통매체 담당 부서장”이라

한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인터넷 소통매체 담당 부서장은 그 밖의 부서의 인터넷 소통매체 개설 및 운영을 위한 기술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 소통매체 담당 부서장은 인터넷 소통매체 채널을 가지고 있는 그 밖의 부서의 운영 실태를 점검·평가하여야 하며, 운영 실적이 우수한 부서(직원)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게시물의 관리) ① 인터넷 소통매체 담당 부서장은 인터넷 소통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소통매체를 통해 게시된 시민들의 궁금한 사항, 의견 및 민원내용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및 의견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 소통매체 담당 부서장은 인터넷 소통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시 기관 인터넷 소통매체 채널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의 공개범위와 종류에 상관없이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이유를 해당 인터넷 소통매체 채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사람의 인터넷 소통매체 계정을 이용하여 당사자에게 삭제 또는 차단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8. 인터넷 소통매체 계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9. 그 밖에 연습성 오류, 장난성 내용 등

제8조(시민 참여행사의 운영) 시장은 인터넷 소통매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홍보, 시민간 상호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터넷 소통매체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시민참여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제9조(SNS 지원단 운영) ① 시장은 시민과 함께 하는 인터넷 소통매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SNS 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SNS 지원단은 시 기관 인터넷 소통매체 채널 운영 등에 필요한 기사취재 및 자료 수

집·제공·게시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③ SNS 지원단이 작성 제출한 기사와 영상물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SNS 지원단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활동실적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SNS 지원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할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에 SNS 지원단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예산지원) 시장은 SNS 지원단 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육,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보상) 시장은 SNS 지원단과 인터넷 소통매체에 기사·자료를 제출하거나 인터넷 소통매체를 기반으로 한 행사 참여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및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